

2018년도 소독 대상시설별 방제용역비 원가계산표

(1회 실시 기준)

(2018. 1. 1현재)

번호	대상시설	소독횟수	대상별 기본료		대상별 추가료	
			기준단위	원/1회	추가단위	원/1회
1	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숙박업소(객실수 20실 이상),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숙박업소	4월~9월까지 1회 이상 /1개월 10월~3월까지 1회 이상 /2개월	20실 (500㎡)	178,000	추가객실 (25㎡)당	6,170
2	「식품위생법」시행령 제21조제8호(마목 제외)에 따른 식품접객업소(연면적 300㎡ 이상)		300㎡	251,000	추가㎡당	160
3	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시내·농어촌·마을·시외(고속버스)-전세버스, 장의자동차		10대 (300㎡)	280,000	추가 1대 (30㎡)당	11,250
4	「항공법」에 따른 항공기		300㎡	248,000	추가㎡당	160
5	「해운법」에 따른 여객선			248,000		160
6	「항만법」에 따른 대합실(연면적 300㎡ 이상), 「항공법」에 따른 공항시설			180,000		170
7	「철도사업법」 및 「도시철도법」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			198,000		180
8	「철도사업법」 및 「도시철도법」에 따른 역사 및 역무시설		180,000	170		
9	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른 대형마트, 전문점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, 그 밖의 대규모 점포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통시장		2,000㎡	388,000	추가㎡당	120
10	종합병원, 병원, 요양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		1,000㎡	289,000	추가㎡당	150
11	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(한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)/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(연면적 300㎡ 이상)	4월~9월까지 1회 이상 /2개월 10월~3월까지 1회 이상 /3개월	300㎡	251,000	추가㎡당	160
12	「건축법」시행령 별표1 제2호 라 목에 따른 기숙사/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별표2 제8호 가 목에 따른 합숙소(50명 이상 수용)		300㎡	267,000	추가㎡당	160
13	「공연법」에 따른 공연장(객석 수 300석 이상)		500㎡	243,000	추가㎡당	150
14	학교(초·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)		3,000㎡	479,000	추가㎡당	100
15	학원(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연면적 1,000㎡ 이상)		1,000㎡	246,000	추가㎡당	140
16	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(연면적 2,000㎡ 이상)		2,000㎡	293,000	추가㎡당	90
17	어린이집 및 유치원(「영·유아보육법」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50명 이상 수용시설)		300㎡	267,000	추가㎡당	170
18	「주택법」에 따른 공동주택(300세대 이상)		4월~9월까지 1회 이상/3개월 10월~3월까지 1회 이상/6개월	300세대 (1세대 106㎡ 기준)	2,223,000	추가세대 (106㎡) 당
※	단독주택		1세대 (100㎡ 기준)	163,000	추가㎡당	140
※	공중화장실	4월~9월까지 주3회 이상 / 10월~3월까지 주1회 이상	1개소(20㎡)	62,000	추가㎡당	670

※ 상기 원가계산표는 기획재정부 예정가격 작성기준(계약예규 제354호, 2017.12.28)에 의거 비목별 산출됨.
(본 원가계산표에는 재료비, 노무비, 경비, 일반관리비, 이윤이 포함되어 있음).

※ 상기 원가계산표는 기본 방제용역 원가이며 별도 방제용역 항목이 추가 될 경우 가격이 변동될 수 있음.

※ 대상별 추가료는 기본료 기준단위를 초과할 경우 적용됨.

※ 원가계산표는 구충(위생해충), 구서, 살균소독 비용을 포함한 것임(수목병해충 방제 비용은 미포함).

※ 상기 원가계산표는 (사)한국방역협회에서 규정한 기준에 의거 원가계산 공인기관에서 산출한 것이며(노임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표한 제조부문 노임단가 중 단순노무종사원을 적용한 것이며 전문인력 활용 시 추가 될 수 있음), 예정가격 작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서 실제 적용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음.

※ 공중화장실 소독횟수의 관련근거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2호(2018.1.1.시행)

